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선수건강증진위원회 규정

2016. 09. 29. 제정

제1조(설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정관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선수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 지원 관련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의 의료 지원·후원 등 협력에 관한 사항
2. 선수건강증진프로그램 지원 및 후속조치 등 협력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치료방법 모색
4. 발달장애인에 건강정책과 선수건강증진프로그램 발전방안 모색
5.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6. 기타 의료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인
3. 위원 2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회원) ① 위원회의 회원은 스페셜올림픽국제본부(SOI)의 선수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양성과정(TTT-Train the Trainer)을 이수한 자로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본 위원회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② 선수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양성과정(TTT-Train the Trainer)을 이수하지 않은 자나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임무) ①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정관 및 제규정 준수

② 위원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상벌) ① 위원회의 회원으로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및 본 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원으로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및 본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소집)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경비 등의 지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참석수당, 활동경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2016.9.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